

(재)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고 제2026-134호

콘텐츠와 ICT 융합산업 육성으로 전북 경제·사회·문화 기여

2026 전북 지역특화콘텐츠 후속지원 모집공고

(재)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는 「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」을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서비스 및 활성화를 위해 후속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기 신청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. 8. 4.

(재)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

1

공모개요

○ 사업목적

- 본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 및 후속성과 창출
-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

○ 사업기간(협약기간): 2026. 9. 1. ~ 2026. 10. 31.

○ 지원대상: 2025년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

사업구분		주관기업	과제명	비고
유휴 공간	시군협력	(주)**그램	익산 홀로스테이션_시마루이 & 미륵사지 실감형 콘텐츠	—
	기업자율	(주)아*	말도섬 내 IoT기반 야외 방탈출 미션 게임	—
		델**(주)	전주국제영화제 컨셉의 몰입형 영화체험공간	—
유망과제		**베리ent(주)	미륵화의 숲, 힐링의 꽃을 피우사	—
		***바이브(주)	AI 전통 체험 포토콘텐츠 개발	—
		**클21(주)	완주 : 나의 도시, 나의 레이스	—
		퍼스널**	군산 근대문화유산 XR 포토존	—

* 후속지원사업으로 상기 기업에 한해 지원됩니다.

2

지원내용 및 자격조건

- 지원내용: 지역특화 콘텐츠 후속(마케팅·상용화)지원(직접비 지원)
- 지원금액: 기업당 최대 1천만원
- 지원규모: 2개사 내외

구분	지원내용(안)	지원금액
홍보·마케팅	○ 인플루언서·기관·민간업체 등 현장 방문 팸투어 ○ SNS(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등) 타겟 광고 ○ 콘텐츠 홍보용 숏폼·하이라이트 영상 제작	기업당 최대 1천만원
상용화	○ 콘텐츠 연계 굿즈 등 판촉물 제작 ○ 리플렛 제작 및 현장 안내 사인물 개선 ○ 관객(이용자) 참여형 이벤트(스탬프 투어, 리워드 등) 운영	

* 상기 명시된 내용 외에도 사업 목적 및 후속 지원 성격에 부합하는 항목 지원 가능

- 지원자격: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 - ① 2025 전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지원 보조사업자
 - 유희공간 활성화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사업
 - 지역특화 콘텐츠 유망과제 사전기획 및 개발지원사업
 - ② 공고일 기준 본사가 전북에 소재하는 사업자(개인 및 법인)
 - 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(중소기업의 범위)」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콘텐츠 제작 역량 및 인력을 보유한 기업체
 - 통계청 「한국콘텐츠산업분류」상의 업종(업태)을 등록한 사업자
- 지원조건
 - (성과물제출) 협약기간 내 과제 완료 및 결과물 제출(2026. 9. ~ 10.)
 - (자부담금) 신청 지원금액의 10%이상 현금 매칭
 - (보증보험) 확정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가입
- 지원금교부비율: 일괄 교부(100%) (단,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○ 사업참여 제한사유

① 공고일 기준, 본사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

(본사가 타 지역인 경우) 공고일 기준 전북 내 지사 설립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

※ 협약 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‘중소기업확인서’를 제출하여야 함

② 신청일 현재,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(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, 지원금의 규모가 5,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셈하지 않음)

③ 신청일 현재, 우리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

- 1.5억원 이상의 지원사업 과제를 3년 연속 참여한 경우
- 2년간 받은 지원금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

④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(과제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

⑤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

⑥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결정을 받은 기업,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을 제한받은 보조금수령자

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, 대표자 및 책임자

⑧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우리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업

⑨ 신청일 현재,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(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) 및 기술료를 체납(매출조사 거부, 회피 등 포함)하고 있는 경우

⑩ 신청일 현재 기업의 재무제표/신용도 평가 상의 이유로 이행보증증권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

⑪ 신청일 현재 사업자, 과제참여인력, 대표권자,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「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

⑫ 기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이 지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
3

사업절차 및 선정방법

○ 사업절차(안)

사업공고	선정평가	선정결과공고	현장점검
2026. 8월(15일간) 진흥원 누리집	⇒ 2026. 8월 3주차 서류평가	⇒ 2026. 8월 3주차 진흥원 누리집	⇒ 2026. 8월 4주차 주관/참여기업 현장실사
사업협약	사업운영	결과보고	사업정산
2026. 8월 4주차 과제협약 및 지원금 교부	⇒ 2026. 9. ~ 10. 후속지원 사업운영	⇒ 2026. 11. 실적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	⇒ 2026. 12. 정산 및 잔액반납

○ 선정절차

- (① 자격검토) 제출서류 누락여부 및 지원자격 결격사항 유무 검토
- (② 선정평가) 후속지원사업 운영계획서 및 제출자료 기반 서류평가
- (③ 과제협약) 평가결과에 따른 선정 기업체 사업협약

〈선정평가 평가지표(안)〉

평가항목		평가지표	배점
정성 평가	콘텐츠 운영현황 및 우수성	◦ 지원 과제(콘텐츠)의 정상 운영 여부 및 관리 상태의 적정성	10
		◦ 콘텐츠 운영성과 및 활용가치의 우수성	10
	사업목적 및 필요성	◦ 후속지원의 명확성 및 필요성	10
		◦ 콘텐츠 현안 분석에 대한 타당성	10
	사업계획의 구체성	◦ 후속지원 추진전략 및 성과 도출 계획의 구체성	20
		◦ 예산 편성계획의 적정성	10
	기대효과	◦ 성과목표의 달성 가능성	10
		◦ 지원 이후 콘텐츠 활성화 가능성	10
		◦ 지역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 기여도	10
계			100

4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○ 공고 및 접수기간

- 공고기간: 2026. 8. 4.(화) ~ 8. 18.(화)
- 접수기간: 2026. 8. 4.(화) ~ 8. 18.(화) 15:00 까지

* 접수시간(8. 18.(수) 15:00) 마감 후 도착 분은 불인정 되오니 필히 시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접수방법: 전자우편 제출(happykw17@jcon.or.kr)

○ 제출서류

【신청서류 제출 방법】

☞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·압축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

※ 압축파일명: 지역특화콘텐츠 후속지원_주관기업명.zip

구분	순	제출서류	제출형식	유의사항
과제 신청서	1	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	PDF,HWP (각 1부)	- 표지 제외 10페이지 이내로 작성
	2	사업비 산출내역서	HWP	- 사업비산정기준에 맞게 작성
	3	수행기업 소개서	HWP	- 양식에 맞게 작성
	4	정부지원 수혜실적		
동의서	5	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	PDF	-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, 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
	6	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		
	7	중복지원 여부 확인서		
필수 제출 서류	8	기업자부담금 약약서	PDF (스캔)	- 지정양식에 작성 및 직인날인하여 PDF파일로 제출
	9	사업자등록증	PDF	-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 · 업종, 업태, 별지 등 콘텐츠 기업 확인 가능해야함
	10	법인등기부등본	PDF	-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(법인사업자)
	11	4대보험 가입자명부	PDF	-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(공고일 이후 발급 분)
	12	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	PDF	- 신청일 기준 증명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것
	13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		
기타 서류	14	선택제출서류	자유양식	- 유사 지원사업(상용화·마케팅) 운영 실적 - 피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

※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
※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
※ 상기 제출 서류 이외 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시 추가 서류가 요구됨

5

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, 「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(한국콘텐츠진흥원)」, 「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(한국콘텐츠진흥원)」 등 관련법령 및 관령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,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-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이후 전담기관(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)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내 지급보증보험증권 등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본 사업의 신청/사업 수행에 있어 관계법령, 안내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
-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접수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시,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접수 불가함에 따라 사업담당에게 접수 청탁 연락 금지
- 본 사업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수행기관의 서류 허위제출 등의 사항에 따른 제재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은 사업즉시 중단, 지원금 환수, 사업 참여제한, 유관기관에게 제재사항 안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제안서는 접수일의 해당시간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,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
-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(정부 및 공공기관)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, 지원금 회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

- 제출된 신청서는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(단, 상세정보를 요구하는 우리원의 요청에 따른 자료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)
- 수행기관은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별도의 신규계정(계좌)을 개설해 관리하여야 함(단, 기존 계좌 활용 시 통장의 잔고가 ‘0원’ 이여야 함)
-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향후 참여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며, 선정 이후에도 허위정보 확인 시 선정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음(지급된 지원비 전액 반납)
- 제출의 방법과 서류상의 누락 혹은 오기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원은 통보하지 않으며, 이에 발생한 불이익은 제출기업에 있음
- 신청과제는 우리원 사업과 과제 등의 홍보를 위한 언론홍보와 공식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
-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주요사항 변경 시 해당 내용은 갱신하여 재공고를 시행함
- 제작되는 모든 결과물에 크레딧 및 지원기관 공식로고(전북특별자치도 및 (재)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) 삽입
- 예산 편성 또는 예산 집행 시 과제수행과 관련한 모든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
- 사업 선정 발표 시 선정기업의 협약포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순위(예비선정)를 발표, 차순위 기업이 선정될 수 있음
- 선정 이후 협약서 상의 ‘성과관리’ 조항에 의거,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업 및 참여기업)가 과거 3년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를 위해 실적제출을 협조하여야 함

- 본 사업 제작물에 사용된 소재, 폰트, 이미지 등과 관련한 저작권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주관기업에 있음
-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정책을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희롱·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 등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·시행하고 있음
 -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(교부취소, 계약 해약 등)
 -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·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,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
 - ※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-5678(1번), 홈페이지 <https://bora.kocca.kr>
 -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
 - ※ (24.1.15.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)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
 - ※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: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 의무교육,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,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

6

사업문의

- (재)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문화콘텐츠사업팀
 - (전자우편) happykw17@jcon.or.kr
 - (내선전화) 063-282-2350